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청원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8년 8월 8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박 현 빈 (인) 외 8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건명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청원안
소개년월일	2018년 8월 8일
<p>소개의견</p> <p>제16회 정기회의 청소년국회 정치법제위원회입니다. 청원인 김노은은 2018년 8월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청원안' 입니다.</p> <p>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처리를 할 때에, 이를 정하는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판단할 시에 주관이 가미될 가능성이 상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불법 음란물이나 인권을 유린하는 게시물의 증가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정보의 처리 절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은 결국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피해구제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p> <p>하나의 인격체의 인권을 침해함이 명료한 게시물은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그 원칙과 기준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이러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판단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임시조치 전이나 판단이 어려울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p> <p>제 16회 정기회의 청소년국회 정치법제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다음과 같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p>	

⑦ 임시조치 기간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 침해에 대한 판단 및 조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심의기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가>

## 청원서

### 1. 제안이유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입법취지는, 첫째, 인격권 등의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 특히 2차적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간이/신속한 인터넷상 특유의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행정통제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는 당사자를 통한 사적 자치 방식에 의한 인터넷 내용 규제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둘러싼 법정 논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임시조치가 최초 2001년 도입된 이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시조치가 활성화되면 인터넷상 권리침해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절차는 단순한 절차로 구성되어야 하고, 각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이 없도록 형식적인 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행법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절차상 임무를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고,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시조치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당사자 간의 권리침해 사실의 존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등 과중한 절차를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실질적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관성이 가미된다는 점, 지나친 절차와 개인 판단의 부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임시조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 판단이 어려울 시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삭제함으로써 이 법안의 취지에 맞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주요골자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를 개정한다.

제 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조치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⑦ 임시조치 기간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 침해에 대한 판단 및 조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심의기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추가>

신구문 대조표

현행	신설
<p>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p> <p>(중략)</p> <p>&lt;추가&gt;</p>	<p>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u>임시조치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u></p> <p>(중략)</p> <p>⑦ <u>임시조치 기간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 침해에 대한 판단 및 조정을</u></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심의기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설>
--	--